의안 번호	60

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

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(산업경제복지위원회)

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9.28.

산업경제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일: 2026. 8. 26. 창원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7.(의안번호 제60호)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마산보건소장 이지련)

가.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질환자의 치료・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,

나. 창원시와 의료법인 예경의료재단 예경병원이 협약한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(‘24. 1. 1.~ ‘26. 12. 31.)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3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(위탁 운영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- 「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」 보건복지부 지침

○ 필요성

- 중독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: 중독질환자에게 사회적응 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독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로 사회복귀 지원
-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 : 정신재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도모
-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: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, 이용자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

다.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: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

○ 중독질환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

○ 중독질환자 대상 상담, 치료,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

○ 중독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
○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사업 등

○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

○ 중독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

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 관련 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시 설 명 :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
○ 소 재 지 :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, 3층

○ 기본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프로그램실 등(214m^2)

○ 운영인력 : 6명(비상근센터장 1명, 팀장 등 5명)

○ 이용대상 : 중독질환자 및 가족, 일반시민

○ 시설용도 :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

○ 위치도





위치도	전경

마. 위탁기간: 3년(2027. 1. 1.~2029. 12. 31.)

○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현황

- 2004. 12. 6. 마산시 알콜상담센터 선정(마산연세병원)
- 2005. 6. 29. ~ 2011. 12. 31. 마산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(마산연세병원)
- 2012. 1. 1. ~ 2014. 12. 31. 공개모집 위탁운영(현대사랑병원, 3년)
- 2015. 1. 1. ~ 2017. 12. 31. 재계약 위탁운영(현대사랑병원, 3년)
- 2018. 1. 1. ~ 2020. 12. 31. 공개모집 위탁운영(예경병원, 3년)
- 2021. 1. 1. ~ 2023. 12. 31. 재계약 위탁운영(예경병원, 3년)
- 2024. 1. 1. ~ 2026. 12. 31. 공개모집 위탁운영(예경병원, 3년)

바. 민간위탁 예산: 금359,056천원(2026년 본예산 기준)

구 분	예산액(천원)	비 고
합 계	**359,056**	- 국비 166,753천원 - 도비 35,050천원 - 시비 157,703천원
인건비	268,506	
운영비	31,000	
사업비	60,000	

사. 수탁기관 선정방식: 재계약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**※ 동의안 붙임 1 참조**

○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질환자의 재활 및 중독 정신건강문제 예방·조기 발견 등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로,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 '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'로 정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.

자. 성과평가 결과 ※ 동의안 붙임 2 참조

구분	평가 결과	투입(20)		과정(20)		산출(50)		활용(10)
		인력(10)	자원(10)	준수성 (10)	노력성 (10)	프로그램 (30)	지역사회 사업(20)	피드백 (10)
점수	90.3	10	9.3	10	10	25	16	10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전현주)

○ 본 동의안은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계약 하고자,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○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질환자의 조기발견을 비롯하여 상담・치료・재활・사회복귀 및 가족지원 등을 수행하고,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임.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”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. 중독질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, 재활 프로그램, 가족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요구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제4항[1]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의2제1항[2] 및 「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[3]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금번 동의안은 재위탁이 아닌 기존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예경의료재단 예경병원과 재계약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「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」에 따르면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함.

< 재위탁 및 재계약 > ※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

- 재위탁: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는 것
- 재계약: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

1)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5조의3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**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**

2) 「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(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**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(이하 "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"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**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3.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4.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3) 「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(위탁운영)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**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**

※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(37p)
(2)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나) 수탁기관 선정절차 · (절차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 - 신청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, 업무의 수행능력,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-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 가능. **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.**

○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예경병원이 운영해 오면서 중독관리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, 제출된 성과평가에서 90.3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. 이는 중독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.

○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제2항[4]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라는 규정에 부합하여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, 성과평가 결과 및 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재계약의 필요성과 본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4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13조(계약 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**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**로 한다.

○ 최근 중독 문제는 단순한 알코올 의존을 넘어 도박・인터넷・마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, 개인과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 이에 재계약 이후에도 변화하는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예방・치료・재활 등 중독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, 이에 대한 관리・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·답변요지: 기재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(동의)**

8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참 고 **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현황**

구 분	설 립	근무 인원	운영 현황	현 수탁기관 (위탁기간)	위치	비 고
창 원	2009. 7. (민간위탁)	6명	민간위탁 (최초 '10.9.)	동양의료재단 연세사랑병원 ('26.1.1.~'28.12.31.)	성산구 중앙대로 162번안길 8, 창원보건소 4층	
마 산	2004.12. (민간위탁)	6명	민간위탁 (최초 '05.6.)	예경병원 ('24.1.1.~'26.12.31.)	마산합포구 합포로 2, 3층	